

#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I. 개요

1.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함. 2017. 6. 1.에는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함.

2. 사드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영향평가 대상사업

1)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함) 제4조<sup>1)</sup>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

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① 토지의 취득방식과 무관하게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되며, ②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함.

○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 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음. 오히려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하고 있음. 환경부 역시 질의회신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의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였음.

○ 사업시행면적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공여된 면적이 ‘328,779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2017. 2. 28.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였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을 적용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님.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 제곱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하였어야 했음.

2)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음.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거나 혹은 2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사드배치가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명하고,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국방부가 이미 인적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20만 제곱미터 이상임은 분명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국방부가 말하는 사업면적 10만 제곱미터 이하는, 사드 배치 사업에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시설 목록들을 하나 하나 셈한 면적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개별 공사 면적의 합계 면적은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게 과거 사례(도창리 백골부대 사례)에서 환경부와 법원의 판단으로 명백하게 확인됨. 환경부와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지의 면적이라고 보았음.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항목이 적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4.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II. 사드체계 배치의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여부 검토

#### 가. 관련법령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2)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경우 국방

---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5년에 환경부가 발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을 보더라도,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 등을 국방·군사시설로 보고,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나.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국방시설사업법 적용 여부에 관한 검토

##### 1) 국방부 주장

- 사드체계 배치는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측이 군용지를 미측에 SOFA에 따라 공여한 후 미측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음
- 토지 취득방식이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경우에는 토지가 '수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방시설사업법 적용이 되지 않음

=> 토지 취득 방식과 국방시설사업법 적용 여부는 무관하고, 공여된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국방시설사업이면 법적용 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음.

##### 2) 사드체계 배치사업을 위한 공여토지의 토지취득 방식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음

- 국방시설사업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
-

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국방시설사업법 제1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규율을 포함하고 있음(국방시설사업법 제5조 제1항).

○ 그러나 이는 국방부의 주장과는 달리,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 그치고, ① 국방시설사업법의 목적(법 제1조)이나 정의(법 제2조)에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등을 수용이나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지 않은 점, ②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을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은 반드시 ‘토지등이 수용이나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 ③ 국방시설사업법의 제4조 제2항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 제3항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방시설사업법 제5조 제1항은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사업시행자는”이라고 각 규정하여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이외의 사업계획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하는 경우 국방시설사업법의 제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음.

○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업무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만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는 국방부 스스로가 수용 또는 사용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아래와 같이 그 승인절차를 설명하면서 “아래의 ③, ④, ⑤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의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명확히 기재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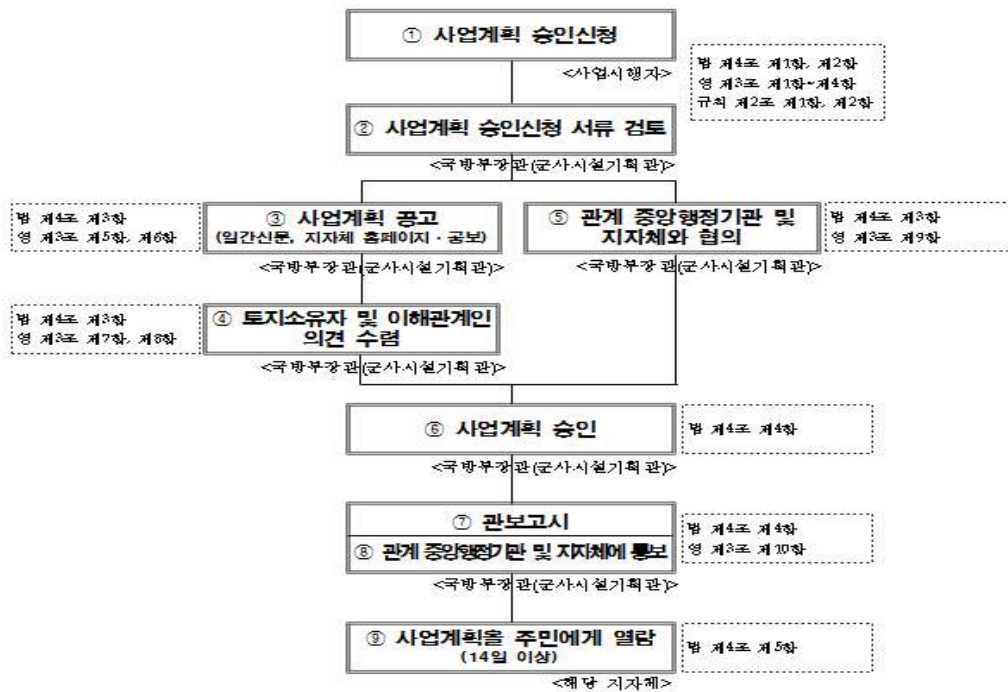
- 환경부가 2014. 9. 발행한 ‘환경영향 등 질의회신 사례집’에 의하더라도, 국방부가 “토지수용(강제수용)이 불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소규모환경영향 평가로 협의할 수 있는지”라고 질의하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은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이므로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함”이라고 명확히 회신 하였음

- 결국 수용이나 협의취득, 교환 등 부지 확보 방법의 문제는 사업의 구체적인 방

별표 1]

### 사업계획 승인 업무절차제3조 관련

※ 아래의 ③, ④, ⑤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법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영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 중 하나에 불과하고, 국방시설사업법은 특정한 부지 확보 방법을 취한 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아닌 국유재산법상의 교환 절차를 거쳤기에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

### 3)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므로 국방시설사업법의 적용을 받음

- 사드배치체계는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국방시설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바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바, 국방시설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방·군사시설”의 사업시행자는 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②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③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동법 제4조 제1항).
- 법상 규정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고,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법을 적용하여 미군기지내에서도 환경영향평가한 판례와 사례가 있음(첨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참조).<sup>4)</sup>

#### 다.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목적으로 확보한 부지 자체가 148만㎡

---

4)



- 국방부 “성주에 배치할 사드는 일본에 있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고, 광의 것과 유사하다”라고 발표했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한국에 오는 사드포대는 광 포대보다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발표<sup>5)</sup>
- 외교부, 서울행정법원 2017아11011 사건(공여처분 효력정지)에서 “경북 성주군 지역 부동산 328,779제곱미터를 미합중국에 공여한다”고 승인하였고, 공여된 부지의 구체적인 위치는 주소(지번 등)가 아닌 경계좌표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였음.

## 2.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2010구합19256 판결서, 2011.9.28, 서울행정법원”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제2항」 관련 “시행령 발표1”에 의한 대상사업 중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총 면적 981,354㎡)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호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 제외) 안에서 시행되는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활주로 L=2,743m, 과주로 L=305m)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는 제외한다)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5) 2015.경 미 육군이 실시한 광 환경성평가서(Environmental Assessment), “2013년 4월 전개된 사드 포대는 광 섬 북서쪽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 내 ‘북서 필드’(Northwest Field, NWF)의 활주로 동쪽 끝 지역 약 237.4에이커(96.1헥타르, 약97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점유했다{During the initial deployment of the expeditionary THAAD system in April 2013, a 237.4-acre (96.1-hectare) emplacement area was occupied by Task Force Talon (Figure 2-2)}”고 기재

○ 이를 들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국방부가 주장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은 곧 주한미군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시설 및 구역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여면적이 사업시행면적이라고 할 수는 없음. 특히 국방부는 사드 체계 배치 사업의 논의 초기부터 당해 사업은 “한반도 방위”를 위하여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하여 온 바에 “사업 시행면적”은 공여 면적보다 넓을 수밖에 없음(공여면적이냐 경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음).

○ 또한 국방부는 최근 실제 사업시행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이는 다음 항에서 설명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20만 제곱미터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이미 우리 법원은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격장 내 삼림벌목 규모(실제 피탄지로 공사가 필요한 구역)는 56,142㎡(실제 개발면적, 피탄지 3개)에 불과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대상부지는 사업계획에 기재된 903,384㎡이므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참조)

○ 즉 사드체계 배치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은 최초로 부지로 확보하고 군사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148만 제곱미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

6) 국방부 2016. 7. 8.자 보도자료



7)

< 3-5> 피탄지 대상사업 지역 선정의 문제점



<그림 3-6> 화기의 성능을 미고려한 훈련장 사업범위 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어야 함.

## 2.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여부 검토

- 설령, 국방부 주장과 같이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가 넘지 않더라도, 사드 체계 배치사업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상의 군사시설 설치사업 이거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에 해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2호), 동법 제22조 제1항 제16호에서는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설치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防空)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에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방부는 롯데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2017. 2. 28.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근거로 구 성주 롯데 골프장 전체에 대해 성주경찰서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 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 사건(대구지방법원

2017아10102)에서 피신청인 성주경찰서는 “현재 이 사건 골프장은 국방부 소유로서, 국방부와 50사단 기동대대, 제2작전사령부 소속 간부 및 병사 약 200여명이 주둔하고 있고, 초소, 위병소, 통신망 등의 시설도 갖추었으며 미군에 대한 부지공여를 대비하여 내부 측량 및 준비 작업 등의 군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장은 군사기지법이 정한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

- 따라서 구 성주 롯데 골프장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이며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적어도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기 역시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함. 국방부도 “환경영향평가는 시설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설공사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운용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음(2017. 6. 2. 국방부 일일정례브리핑)

### 3. 사드체계 배치사업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는 없음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 특히 사드배치 사업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구조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선정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안전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전, 사후에 주

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함.

### III. 결론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